

## 분리발주 및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기관

□ 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 대상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

#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 1.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단위: 원/톤)

배출지	품명	적용범위	적용단가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폐콘크리트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24,377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25,939

## 2. 재건축·재개발 공사

배출지	품명	적용범위	적용단가
재건축·재개발 공사 (주택·아파트 등 철거·해체 공사)	건설폐재류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41,951
	건설오니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 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유율 85%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	52,360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60,322

## 3.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배출지	품명	적용범위	적용단가
재건축·재개발 공사 (주택·아파트 등 철거·해체 공사)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152,401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156,247

### [해설]

- ① 동 처리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4호(2019.6.1)"예정가격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2019.10.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
- ②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19년 건설공사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 ③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 ④ 처리대상폐기물의 규격이 80\*80cm 이상으로서 별도의 소할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9장 대형브레이커」 소할품 등을 참고하여 별도 계상이 필요함
- ⑤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
- ⑥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폐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 등으로 설계하여서는 안 되며,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됨(다만, 단가를 예외적용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
- ⑦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판매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

본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59호, '19.8.19)” 중 적정처리비(예정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건설폐기물 처리단가임[관련 규정 : III.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 계약 등 - 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 가. 적정처리비(예정가격) 산정 - 2)호]

## 순환골재 의무사용 관련 자료

### □ 순환골재 정의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건설폐기물법 제2조제7호)
- (순환골재 품질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건설폐기물법 제35조)
  - 현재 도로기층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성·복토용 등 13개 재활용 용도별 품질기준 규정(국토교통부 소관)

### □ 품질기준 및 재활용 용도

- (품질기준) 「건설폐기물법」 제35조

법 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711호)

- (재활용용도)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재활용 용도(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4조)

구 분	재활용용도(13개)
순환골재	가. 도로공사용 나.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복토(覆土)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 다.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 라.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마. 매립시설의 복토용 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성토용(단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시설 설치로 한정) 사.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아.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나. 콘크리트 제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보수용
순환진흙·순환토사**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마. 매립시설의 복토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 바. 「농지법 시행령」제3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계량을 위한 성토용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
2. 콘크리트 제품
  - 가.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
  - 나.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상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품

\*\* 순환진흙 : 건설오니를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등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  
순환토사 : 건설폐토석을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등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

## □ 의무사용 및 대상

### ○ (의무사용) 「건설폐기물법」 제38조

법 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의무) ①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 (의무사용량)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용,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등 사용용도별로 소요량의 40% 이상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7-1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48호, 2017.9.27. 불임참조)

○ (의무사용 대상 공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5조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나.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5.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8.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9.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10.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외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법 제2조제1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 (의무사용 대상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15호)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7-175호, 2017.9.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48호, 2017.9.27)

### 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 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40%이상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다.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및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아.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매립시설 복토용 (일일·중간·최종복토)	

###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
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이하 “농어촌도로” 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제품 소요량의 40%이상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다. 「하수도법」 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바.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아.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제품 및 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용량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킬로미터 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

-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한다)
- 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 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 4. 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17-175호, 2017.9.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발주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는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